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5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박영찬 사무총장
 - 오늘 회의에는 KBS 정인석 기자,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진보네트워크 정민경 활동가, 사법연수원생 이종학, 전홍준 씨 등 총 6인의 방청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박 만 위원장
 -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민의례

- 박 만 위원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4. 회의 비공개여부 결정

- 박 만 위원장
 -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안이 2건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바> ‘조정전 합의 권고에 따른 종결사건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의 실명과 사적인 생활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결사항 사>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역시 개인의 실명과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 외의 안건은 모두 공개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에 대해서

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박 만 위원장
 - 전차회의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제13차, 제14차 회의록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텐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희 위원
 - 제13차 회의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방송심의소위에서 의견진술했을 때에는 40%가 사과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80%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80%로 수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상당부분이 사과에 할애됐다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80%로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 박성희 위원
 -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본인의 발언 부분에 대한 정정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3차, 제14차 회의록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박 만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

지 모두 4번의 소위원회회를 개최해서 45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 과징금 1건, 법정제재 24건을 전체회의에서 다루도록 건의했습니다. 행정지도 17건, 문제없음 3건을 건의했습니다. 지상파의 경우에는 방송언어 위반과 저품격 드라마 9건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건의했습니다. 오락, 코미디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3건을 '권고'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심의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5건도 오늘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지상파 방송3사의 드라마 3건이 모두 공교롭게도 자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영화 속의 프로그램, 해외제작 드라마, 영화 프로그램 등 모두 8건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건의했습니다. 오락과 토크쇼, 그리고 예고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8건을 '권고'하고, 1건을 '등급조정 요구'했습니다. 특히 케이블TV가 최근에 보편적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비록 심야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방송들이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소위원회에서는 안건 중에 국가원수에 대한 욕설이 담긴 트위터 계정을 그대로 지상파방송이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장시간 노출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논란 끝에 행정지도 3명과 법정제재 2명, 이렇게 3:2로 의견이 나뉘어서 다수결로 보면 '권고'이기는 하지만, '권고'로 건의하면서 전체회의에서 이런 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필요하다면 논의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찬묵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원래 소위원회는 의결해서 부동의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정지도 사안이든 법정제재 사안이든 모두 전체회의에 올려서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접수가 안 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최찬묵 위원

- 어쨌든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 심의에 따른 처분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소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욕설적인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없이 단순한 행

정적인 조치만으로 종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 엄광석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건으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결절차를 구해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 김택곤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동수로 넘어왔을 때는 전체회의에서 재론을 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어떻습니까?

○ 엄광석 위원

-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아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제재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면 그것을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법정제재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토론한 뒤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체회의에서는 보고만 받고 종결해 오고 있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행정조치로 끝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최찬목 위원

-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수가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조치인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에 그쳤던 법정제재 의견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그것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할 문제 아닙니까?

○ 박 만 위원장

-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지

만 소위원회의 결론도 결국 전체 위원회 이름으로 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의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찬목 위원님께서도 소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보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 엄광석 위원

- 지금 어떤 건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입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찬목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SBS가 지난 4월 28일 방송에서 재보궐선거를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트위터 계정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 ID가 '2MB18noma', 닉네임은 'MB OUT'이라고 되어 있는 트위터 계정을 클로즈업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월 27일 MBC '100분 토론' 방송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루면서 여론을 소개했는데, 화면에 나온 트위터 계정 ID가 'mb2c8nom'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를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최찬목 위원님은 '국가원수에게 직설적으로 욕설을 하는 트위터 계정이 과연 소위원회 결정만으로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갈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론해 보자는 취지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물어 봐야 하니까 문제의 화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엄광석 위원

-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3:2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회의에서 재론할 수 있다...

○ 엄광석 위원

- 그때 무엇으로 결정이 났지요? 행정제재입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렇지요. 3:2로 '권고'로 결정 났지요.

○ 엄광석 위원

-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님이 지금 문제의 화면을 말씀하시면서 장시간 방송했

다고 이야기하시는데….

○ 권혁부 부위원장

- 장시간이 아니고….

○ 엄광석 위원

-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진술을 청취해 봤더니 양 방송사 측에서 처음에는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장면을 수정했다고 분명히 진술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심사숙고 끝에 3:2로 '권고'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비난 화면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편집을 하다가 실수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수정했다는 방송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소위원회에서 '권고'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재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제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우선 이 사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 후에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지요.

○ 박 만 위원장

- 그러니까 그때 소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상정하지 않을 것인지 부터 결론을 내리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엄광석 위원

- 그렇시다.

○ 박경신 위원

- 위원회가 규칙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규칙을 개정하려면 일정 기간 공시도 해야 되고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회의에서 규칙을 개

정할 수 있지만 아직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칙은 어쨌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면 “방송심의소 위원회가 제1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태까지 계속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속 재론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회의운영 규칙상 재론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결을 한번 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지 방송사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감수할 수는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재론하게 되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것은 소위원회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그렇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보면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런데 의결이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 박 만 위원장

- 의결이 끝나서 소위원회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의 동의를 지금까지 다 얻지 않습니까?

○ 박경신 위원

- 아니지요. 전체회의의 동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고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4항을 보면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전체회의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낙인 위원

-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을 때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3:2로 결정 난 사항은 모두 전체회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것은 사안이 중요하니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

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결론을 내서 방송사에 통보할 때는 위원님들 아홉분의 성함을 전부 연서해서 보내게 되는데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안건이 있었던 것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

○ 박경신 위원

-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제4조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의미가 없는 것이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위원 세 사람만 동의하면 항상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일반적인 조항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심의에 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보면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의결이 끝난 것으로 본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나 일부 위원님이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통신심의소위에서 수백 건을 의결했고 그것들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데 다시 세 분만 합의해 주시면 전체회의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그렇지요.

○ 박경신 위원

- 아니지요. 그렇게 못 하지요. 시정요구가 결정됐는데 수용하지 못 하겠으면 법대로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통신심의소위에서 다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박 만 위원장

- 오늘 <보고사항> 중에 통신심의소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 박경신 위원

- 이것은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보고사항>도 접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요.

○ 박경신 위원

- 아니지요. <보고사항>은 보고내용을 이런 문서로 해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발언내용의 경우에도 <발언내용>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 발언내용이 틀렸다고 하면 정정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 권혁부 부위원장
 -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의결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다른 2인의 동의를 있으면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배경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박경신 위원
 - 위원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있으니까 통신심의소위든 방송심의소위든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에 '그것은 소위에서 논의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합시다'라고 먼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규칙에 따라서 의결이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아니지요. 제 이야기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절대적이라는 전체가 붙었다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그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장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 박경신 위원
 - 아니지요.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결한 것을 재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니까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지요.

- 박 만 위원장
 - 법의 취지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전체회의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소위원회에 위임을 한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결론낸 것을 전체회의에서 추인해 주면 그것이 곧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회가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 박경신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여태까지 위원장님이 해석하신 것 중에서 가장 불합리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8조제2항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전체회의에 보고가 돼서 접수가 되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전체회의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요.

- 박경신 위원
 - 보고하면 보고하는 것이지 보고접수는 무엇입니까? 보고접수라는 말이 이 규칙

에 나오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방송심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에 와서 행정제재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다루자라는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 찬반을 물어서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다루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그렇게 했다는 것은 회의규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통신심의소위에서 의결하고 끝난 것이 있는데, 제가 두 분만 동의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서 몇 백 건이고 다시 논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박 만 위원장

- 보고석상에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미 보고가 끝나서 의결을 선포했으면 지나간 것이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시면 되지요.

○ 박경신 위원

- 어디에도 보고추인이라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제8 조제2항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 박 만 위원장

- 의미가 있지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나는 왜 내 뜻을 묻지도 않고 소위원회 결정 문서에 내 서명날인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9명 위원의 이름이 적히고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것입니다.

○ 엄광석 위원

- 지금 대통령에 관한 육설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때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행정제재인 '권고'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행정제재로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은 국

가원수에 대한 모욕 부분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심의 끝에 결정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방송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황을 물론 100%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 징계가 일어나면 외부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재발방지 약속도 했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과라는 것이 거의 틀림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논의가 다른 데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물론 법정제재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니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제재가 난 것까지 이렇게 매번 전체회의 때마다 재론된다면 저는 소위원회의 기능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뤄서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토론해서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사항인 만큼 전체회의에 재부의해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시지요.

○ 박 만 위원장

- 지금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참여하지 않으신 구종상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설사 참여했던 사람이라도 이것은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 장낙인 위원

- 예를 들어, 소위원회에서 3:2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이 났을 때 만약 두 분이 전체회의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전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3:2로 결정이 났지만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그 부분을 제가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박경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기 위원회 때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재수위에 는 소수였지만 다수에 합의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합의된 의견으로 해서 결정이 된, 그때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 사안처럼 두 분은 법정제재로 가야 되겠다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이 행정지도로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소수의 의견을 내신 쪽에서 그것에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회의로 올라온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좌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위원회 회의록도 보시면 기타로 해 놓았는데 다시 말씀하셔서 고쳐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달리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이나 '의결'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과 '의결'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경신 위원

-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 이러면 소위원회 규칙을 도대체 왜 만듭니까? 그리고 관행을 말씀하시는데...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관행이 아닙니다. 1기 위원회 당시에 위원님들이 소수의견을...

○ 박경신 위원

- 보고는 무엇이고 추인은 무엇이고 의결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규칙을 만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때문에 SBS에서 방송이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보도한 것도 다시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끝난 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이야기합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장낙인 위원님 이야기와 관련해서 지금 장 위원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날 토의 때 그렇게 하면서 3:2로 결론이 나서 이것은 전체회의에 가면 이론이 있는 경우 재론할 수 있다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엄 위원님도 ‘그런 것이라면 알았다’, 상임위원님께서도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넘어왔는데, 다행히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론이 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소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신 분이 ‘내가 보기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데는 참여 안 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만약 하신다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최종 결론은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데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기 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문제를 다루었고, 소위원회에서 법정재재로 온 것도 전체 위원님 중에 ‘그것은 법정제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분이 문제제기를 해서 재론을 거쳐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제재로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2MB18nom’을 가지고 지난번에 임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한 후에 그다음 전체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위원님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통신심의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면 이미 의결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통신심의 안건도 전부 재부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박 만 위원장

- 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법 해석상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할 것을 소위원회에 위임해준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체회의에서 동의해서 보고를 접수해 주면 그때 소위원회의 의견이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 한번 소위원회에서 했다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의사는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상 구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택곤 상임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규정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얻었을 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러니까 5명이 참석해서 3명이 '권고'로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네 사람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위임을 했으니 당연히지요.
- 박 만 위원장
 - 그것은 아닙니다.
- 박경신 위원
 - 이것에 관해서 지난 전체회의 때도 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을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상이 무엇이나, 소위원회가 전체회의 결정을 대체하는 것이냐, 그런데 다들 대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체하는 것이고 지금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분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참석 안 한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면 다르다는 내용이 법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법에 소위에서 한 것을 보고하고 보고가 접수되어야...
- 권혁부 부위원장
 - 상임위원님, 소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3:2로 '권고' 결정이 났지만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재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광석 위원님이 그것이 무엇이나라고 해서 실무진들이 설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 위원님도 수긍하고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하였고, 상임위원님께

서도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 와서 재론이 될 경우에는….

○ 박경신 위원

- 회의록이 없는 석상에서 그렇게 변칙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주 변칙적인 결정인데,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확인해야지요.

○ 김택곤 상임위원

- 보도록 하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지금 말씀 중에 변칙적인 결론이라고 말씀하셔서 실무자로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립니다. 여태까지도 소위원회의 결정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수의견에 합의하지 않으면 항상 전체회의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아니고 전체회의로 올린다는 것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실무를 잘 진행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바꾸든지 해야지, 지금 이 규칙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통신심의소위에서 내리는 결정, 만장일치로 내리면 전체회의를 갈음하는 것이고, 방송심의소위에서….

○ 박 만 위원장

- 갈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체회의에 다시 올라옵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의결이 아니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날 소위원회 내용이 녹취된 것이 있습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있지요.

○ 박 만 위원장

- 사무처에서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 김택곤 상임위원

- 녹취록을 봐야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통상적으로 의결이라 함은 위원님들께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권혁부 소위원장님이 예를 들어 '소수의견 달아서 주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의결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창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창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 박 만 위원장

- 방송심의실장은 당시 소위원회 자료를 찾아오십시오.

○ 최찬묵 위원

- 지금 규칙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와 제8조가 조금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4조제1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요건에 정한 숫자를 채워서 의결한 경우에도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논란을 벌이는 것이 의아합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제8조에서의 소위원회 결의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규정은 소위 말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현재 남은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장이라는 것은 소위원장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최찬목 위원
 - 외형상 약간씩 충돌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규정한 사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 박 만 위원장
 - 원래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해야 하는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이유는 '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동의했다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전체회의의 의결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서명날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이 '이것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시 이의를 제기한 분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토론하고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제1기 위원회 때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론을 제기하면 전체회의에서 다루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제재 수준을 더 높이는 이의가 있을 때도 전부 다시 다릅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전체회의에서 제재수위를 낮춘 경우도 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낮추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제재수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반영됩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자꾸 심의규정 제8조를 주장하시면...

- 박 만 위원장
 - 제재수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전체회의 결과 문제를 안 삼을 수 있으면 문제를 안 삼는 것이고 그것은 그다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통신심의소위의 경우 세 분이 결정하시면 나머지 여섯

분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끝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 해석상 제 견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날 소위원회에서도 그 점까지 논의한 바가 있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우선 확인할 것이 그때 방송심의소위에서 '권고' 3인, '주의' 2인이라고 하고 나서 권혁부 소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전체회의로 넘기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느냐 확인을...

○ 권혁부 부위원장

- 전체회의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재론할 수 있다, 제가 그 상황을 그대로...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러니까 녹취록을 놓고 이것이 명백하게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는 그 판단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무의미합니다.

○ 장낙인 위원

- 지금까지는 소수의견이 있을 때 '이것은 전체회의에 부의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고 전체회의에 올라오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과거 소위원회 결정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십시오.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행정제재로 하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주의'로 전체회의에 올라왔는데 전체회의에서 '경고'로 제재수위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

○ 장낙인 위원

- 수위를 높이고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제4조에서 위원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적위원 3분의 1(위원장 포함) 이상'을 이야기할 때 위원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소위원장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전체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겠지요.

- 장낙인 위원
 -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박 만 위원장
 - 제2조제2항에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장낙인 위원
 - 소위원회 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이 전체회의에 올려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가는 것이지요.

- 박 만 위원장
 - 제2조제2항을 읽어보십시오.

- 권혁부 부위원장
 - 소위원회 위원장이면 무엇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 장낙인 위원
 - 위원장 포함 3분의 1 이상이지 않습니까? 다섯 분 중에 위원장 포함한 두 분이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 권혁부 부위원장
 - 그 이야기는 그 위원장을 둔 것은 위원회 결정에 관해서 승복할 수 없을 때 말하는 것인데 소위원장이 포함된 데서 결정했는데 무엇을 또 재론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장낙인 위원
 - 소위원장을 포함한 두 분이...

- 박 만 위원장
 - 제2조제2항에 보면 전체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전체 위원장이지요.
- 최찬묵 위원
 - 제2조제2항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고, 제3조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규칙에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장은 전체 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더 여지가 없는 것이 소위원장이 포함된 데서 결정한 것을 한 사람의 의견을 더 얻어서 다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의결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 부분은 제2조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 엄광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찬묵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경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과 같이 법 해석을 둘러싸고 지리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때 소위원회가 3:2로 결정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에 관한 비하발언 내용을 화면에 담은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지만 그것이 고의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더 악영향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권고'로 결정한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의견대로 결정해 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지...
- 박 만 위원장
 -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그날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박경신 위원님은 최찬묵 위원의 의견에 반대이시고...
- 박경신 위원
 - 엄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것을 절차적인 이유와 함께 실제적인 이유를 두고 동시에 토론하자고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권고'로 하자면 제 이유는 2가지가 되겠지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4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과 둘째는 이미 의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포괄적으로 논의는 할 수 있겠지요.

○ 김택곤 상임위원

- 좋습니다. 회의록에는 권혁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구종상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에 권한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소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과 관련된 트위터 계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저는 없습니다만 이 사안이 전체 위원회 이름으로 고지가 되고 또 명령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그 일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제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 안 했던 네 분의 위원님들 가운데 세 분은 전체회의에 부의하는데 찬성이시고, 박경신 위원님은 그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견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모두 포함해서 이것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보고를 접수해서 종결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소수의견을 낸 권혁부 부위원장님과 박성희 위원님은 전체회의에 부의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소위원회가 다수결의 구조를 왜곡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성희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박성희 위원

- 이 사안이 국가원수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이라는 차원에서만 자꾸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사적 미디어 영역과 공적 미디어 영역의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해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봅니다. 트위터도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미디어의 영역에 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일정 정도의 품위와 건강한 의견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와 같은 트위터는 가장 최신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과 방송과 접촉했을 때의 메시지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논의는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모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개인의 이메일에서도 스팸으로 걸러질 수 있는 저속한 표현입니다. 또 이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것도 방송심의소위에서는 방송이 지켜야 할 품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에 의해서 훨씬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국가원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거나 혹은 여러분 친구이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트위터 계정에 마음대로 자기의 욕설을 담은 것이 공중과 방송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때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 만 위원장

- 소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에는 세 분이 있었는데, 세 분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기회를 주셔야지요.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 박경신 위원

- 지금 전체회의에 부의해서 심의할 것이면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의를 했던 것과 똑같이 방송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물론 저는 절차적인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만 어찌됐든 심의를 해야 된다면 최소한 다음 회의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것을 전체회의에 올리는 부분은 제가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분이 다섯 분, 그냥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자는 분이 네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시기는 회의를 하려면 회의 이틀 전에 회의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의 때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낙인 위원
 - 전체회의로 올리면 전 프로세스가 다시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 박 만 위원장
 - 그렇습니다.

- 장낙인 위원
 - 그러면 의견진술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아니지요.

- 장낙인 위원
 - 그것은 또 다르지요? 의견진술은 소위원회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 박 만 위원장
 -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것은 그럴 수 있겠네요.

- 장낙인 위원
 - 그러면 다시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 가>의 나머지 사안들은 제가 하나하나 고지하겠습니다. KBS-2TV의 ‘사랑을 믿어요’는 ‘문제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챔프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 폭발! 온천 부글부글 대작전’은 ‘의견제시’로 의

결되었습니다. 씨네프의 '중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제시'로 의결되었고, CH.CGV '하녀 예고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Catch On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도 역시 '권고'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SBS CNBC '파워런치 2부'에 대해서도 '권고'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MTN '이혜림의 S.S시즌 2'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뉴스퍼레이드'에 대해서는 '권고'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YTN <뉴스Q 1, 2부>에 대해서도 '권고'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별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2일 소위원회 결과입니다. SBS-TV 'SBS 8 뉴스'와 MBC-TV '100분 토론'은 조금 전에 논의해서 전체회의로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SBS-TV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21'에 대해서는 '주의', MBC-TV '웃고 또 웃고'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 MBC-TV '몽땅 내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유료방송 부문에서 tvN '현장토크쇼 TAXI'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권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MBC 드라마넷 '미인도'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역시 '권고'로 의결된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월 2일에 의결된 사안입니다.

○ 엄광석 위원

- <1>번, <2>번은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지요?

○ 박 만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 엄광석 위원

- 문제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여기까지는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8일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지상파방송 부문이 총 9건입니다. MBC-AM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대해서 '주의', MBC-TV '남자를 믿었네'라는 프로그램도 '주의', KBS-2AM '박철의 대한민국 유행가'는 '경고', MBC-AM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는 '주의', MBC-FM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는 '경고', SBS-FM '두시탈출 컬투쇼'도 '경고', 이렇게 의결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KBS-1TV '산너머 남촌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고', MBC-TV 'PD수첩'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의결되었습니다. KBS-2TV '개그콘서트'에 대해서는 '권고'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료방송 부문에 대해서 카툰네트워크 '제너레이터 렉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등급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SBS-ESPN '10-11 EPL 시청률 Top 20 매치 스페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는 6월 9일 심의한 내용입니다. MBC-TV '무한도전'에 대해서는 '권고', tbs TV 'K리그 2011 - FC서울:전북현대'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인데 '경고'로 의결되었습니다. 패션엔 '도전슈퍼 모델 NEW STAR 시즌2'에 대해서 '권고', m.net과 KM의 'M Countdown'에 대해서는 2건인데 각각 '경고'가 의결되었습니다. MTV 'The Show'에 대해서도 '경고', E!TV와 SBS플러스 '결혼은 미친 짓이다2' 2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 CH.CGV '주말N영화'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KM 'M Root'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m.net '론치 마이 라이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m.net 'UV 신드롬 비긴즈'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건의되었는데 이 액수는 전체회의에서 정합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예.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나중에 전체회의 안건이 상정되겠네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다음 회의 때 상정됩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다음에 CNTV '올 댓 시네마'에 대해서는 '경고', CH.CGV '쌍화점'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CNTV '동물적 본능'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OCN과 CH.CGV '스파르타쿠스' 2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tomatoTV '종목 X-Ray 2부'에 대해서는 '주의'로 전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일주일에 무려 두 번씩 회의를 하면서 2기가 출범하기 전에 약 한 달 이상 업무공백이 있는데 그때 지연된 사건들을 전부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회의 상정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나.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박 만 위원장
 - <보고사항 나>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택곤 광고심의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차 광고심의소위를 열어 ‘주의’ 1건, ‘권고’ 1건, ‘의견제시’ 1건, ‘문제없음’ 11건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최근에 뷰티, 패션을 소개하는 매거진형식의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 광고모델들의 시연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특정 상품, 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준 내용에 대해서 ‘주의’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상처가 난 피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해당 화장품의 효능·효과 표현 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판단해서 ‘권고’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소위원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결과도 접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박 만 위원장
 - <보고사항 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종상 통신심의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종상 위원
 -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6월 9일까지 제21차, 제22차, 제23차에 걸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조장, 사회질서위반 등 총 2,870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2,179건, ‘해당없음’ 99건, ‘각하’ 13건, ‘기타결정’ 579건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통신심의소위원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도 보고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위원회 예산(안)에 관한 사항

○ 박 만 위원장

- <보고사항 라> ‘위원회 예산(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광호 대외협력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대외협력팀장

- 2012년도 위원회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일에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제2기 위원회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방송통신 내용심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한 핵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신규·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내용규제 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위상 강화, 둘째, 방송통신 콘텐츠의 품격 및 건전성 제고, 셋째,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및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17억 2,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61억 600만원 대비 56억 1,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역은 <붙임> 2012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향후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7월~9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 그리고 10월~12월 사이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붙임>에 2012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1년 예산 170억 6,400만원을 179억 9,600만원으로 9억 3,200만원 증액할 예정입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인력증원 2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심의 인력 총원 내역을 살펴보면 종합편성 채널 심의인력 확충 10명, 보도채널,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심의인력 총원 2명, 선거방송 심의대응 인력 총원 2명, 스마트폰 등 신유형 콘텐츠 심의기반 강화 6명으로 총 20여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비 등은 기획재정부의 경상적 경비 공통인상률에 따라 당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심의활동 강화는 동년 88억 6,300만원에서 135억 4,500만원으로 46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심의활동 강화사업 세부내역 중 방송모니터 요원을 413명에서 493명으로 8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을 7,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7,500만원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6억 2,400만원에서 19억 4,1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올해 8억 8,900만원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9억 5,6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신심의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23억 6,500만원에서 내년 33억 2,5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통신심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신모니터 요원을 30명에서 120명으로 9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지원은 1억 4,600만원에서 내년 1억 7,900만원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서 올해 4억 500만원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는 19억 8,2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중에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 유도를 위해서 4억 4,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올해 1억 7,900만원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1억 7,9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국회 등과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변동과 조정이 가해질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종대 기획조정실장

- 혹시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다시 생기면 그때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지금 이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획조정실로 문의해 주시면 차후라도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오늘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최광호 대외협력팀장

- 그것은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이미 2011년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 최광호 대외협력팀장

- 예, 2011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내년도에는 안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박 만 위원장

- 지금 의안으로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집행에 관해서 먼저 전체회의에서 개괄적인 동의만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체회의에 동의를 받고자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셔서 바로 파악도 안 되실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차후에 기획조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도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명예훼손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

○ 박 만 위원장

- <보고사항 마> '명예훼손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상은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 명예분쟁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준용규정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련 위원회 규칙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 등 향후 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배포해 드린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망법 개정에 따라 기타 운영상 필요한 미비점 개선을 위한 개정을 추진하였고, 주요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관련해서는 규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구성규칙과 절차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구성규칙과 절차규칙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망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위원회 규칙 중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부 절차 규칙 중에서 안 제4조의2와 관련해서는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 처리기한과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보완 소요기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화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보완기간 조정의 사건인 경우 60일, 청구사건의 경우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 동안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하게 되어 있는 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어떤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보완을 요구한 날과 보완이 도달한 날까지 포함해서 보완기간을 명확화하는 규정을 규칙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간계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정이라든지 청구가 민원사무와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조정과 관련해서 피신청인을 변경했을 때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인이 피신청을 명백히 잘못 지정했을 경우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변경요청한 그날을 처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자 하는 규정을 규칙에 담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 조정부 절차 규칙과 관련해서는 무용한 조정신청에 대해서 각하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소가 불명해서 관련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통보 불가능할 경우에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규정을 담고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부 절차 규칙 안14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현행은 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의결을 통해서 처리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절차 규칙 안 제19조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어서 양 당사자에게 조정서를 각각 제시하게 되는데 과연 몇 부를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수와 위원회가 보관하는 플러스 1부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부 절차 규칙 안 제21조와 관련해서는 무용한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위해서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특히 피신청인의 경우에 절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어떠한 자료라든지 출석을 하지 않겠다 등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아무리 조정안을 진행해도 나중에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경우에 한해서 최초로 피신청인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러한 사건은 전통적인 절차인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가야 될 사항은 조정부에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용한 경우에 있어서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부 절차 관련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의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서식이 아닌 단순 사실통지에 불과한 서류일 경우에는 굳이 서식으로 할 필요가 없고, 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발송하는 관련공문에 그 내용을 담으면 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서식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관련 내용을 최종적으로 현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이 내용을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입법예고 결과 제기된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위원회 7월 중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8월 정도에 공포·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붙임>자료에는 규칙안과 대비표,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찬목 위원

-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각하 사유나 조정거부 사유를 신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조정을 '거부한다'입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이상은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 '할 수 있다'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은 없고, 다만 명예훼손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평소에 일을 하면서 불명확하고 봤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하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느냐 산입되지 않느냐 그런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완기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했는데 이것을 정정했을 때에는 그것도 역시 처리기간 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정한 때로부터 기산점으로 한다는 내용,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 처리기간 연장을 법정기간 내 못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한정해서 당사자가 진술을 지체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또는 출석을 안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분쟁조정부에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조정서 작성부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작성부수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또는 한쪽이 조정불응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련 서식들이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서식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효과가 있는 서식은 그대로 하지만 단순히 통지하고 연락하는 기계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서식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마친 내용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를 거친 후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 마> '명예훼손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조정전 합의권고에 따른 종결사건에 관한 사항 (비공개)

- 박 만 위원장
-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 박 만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도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결사항>은 제재조치를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광석 위원
- 그러시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위원장님, <의결사항> 심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6명 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회의 개최하기 전에 보고해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 장낙인 위원
- 개최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현재 적법하게 방청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의결사항

가. 제재조치에 관한 건 - MBC-TV ‘몽땅 내사랑’ 등 9건 (2011-15-157~165)

○ 박 만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제재조치에 관한 건 - MBC-TV 「몽땅 내사랑」 등 9건'입니다. 157호 MBC-TV '몽땅 내사랑'에 대해서는 '경고' 수준의 제재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견입니다. 지금 이 건의 경우에도 소위원회에서는 다수의견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제재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신 위원

- 157호 '몽땅 내사랑'을 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평일의 경우에는 아침 7시~9시, 그리고 오후 1시~밤 10시까지입니다.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아침 7시~밤 10시까지입니다.

○ 박경신 위원

- 안건 본문을 보면 '몽땅 내사랑'의 경우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만 올라왔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5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입니까?

○ 박 만 위원장

- 아닙니다. 붙임 자료를 보시면 제재수위와 관련해서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분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한 분은 '경고',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의견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박경신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뺨 또네', '뺨 돌아', '짱나', '개떡 같은 놈', '한방이면 흑 가' 이런 표현들이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언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는 소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다른 기준을 위반한 것인데, 형사사건의 경우도 한 사람이 2가지 범죄를 저지르면 항상 2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2가지를 합쳐 놓으니까 정교하게 심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심의를 다르게 하려면 이것이 규칙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직원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경신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방송의 내용적인 부분과 광고 부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제재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힘들니까 이것을 별개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박경신 위원

-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간접광고를 과도하게 한 사안과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사안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 부분에 관해서 방송심의소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두 번 심의해서 각기 달리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 의견대로 법이 허용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과 법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합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관행으로 진행되어 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방송심을 할 때 광고 부분은 광고심의소위의 의견을 들어서 가중하는 제도도 언뜻 괜찮아 보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와 광고에 관한 심의가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요. 어느 쪽의 문제 비중이 더 실려 있느냐에 따라 먼저 광고심의소위에서 논의한 후에 전체회의에 넘어오는 식으로 한다든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고 부분 심의를 따로 하고, 방송 내용 부분 심의를 따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광고심의소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지요. 이번 건은 간접광고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될 사항이었고,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낙인 위원
 -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이 대사를 통해 언급한 내용들이 '광고효과의 제한' 조항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별개로 심의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같이 하는데 소관 소위의 의견 조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 장낙인 위원
 - 이것을 광고심의소위로 넘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소관 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작해서 제재수위를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장낙인 위원
 - 의견을 묻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알겠습니다. MBC-TV '몽땅 내사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BS-2AM '박철의 대한민국 유행가'입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박철의 대한민국 유행가'는 소수의견으로 '주의'가 있었고, 다수로 '경고'에 합의 하셨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처음에는 '주의' 의견을 내신 분이 최종적으로 '경고'에 동의하셨다는 것이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 박 만 위원장
 - 그러니까 만장일치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의견이 없으시면 KBS-2AM ‘박철의 대한민국 유행가’는 ‘경고’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MBC-FM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입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역시 제재수위는 아까와 같은 사안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역시 만장일치로 ‘경고’를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MBC-FM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경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BS-FM ‘두시탈출 컬투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이미 ‘경고’ 1회와 ‘주의’ 2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규정을 또 위반한 것이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 박 만 위원장
 -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경고’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SBS-FM ‘두시탈출 컬투쇼’도 ‘경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BC-AM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주의’ 조치키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맞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MBC-AM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MBC-TV의 ‘남자를 믿었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주의’이고, 한 분이 ‘결정유보’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자살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그렇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김택곤 상임위원

-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위원회에 소수의견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 달여 간의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상파 라디오 토크 프로그램에서 품위가 낮은 토크 내용과 대담 내용들이 3사 공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진술 과정에서도 보면 제작진들은 다들 '왜 이러지?, 어때서?' 그런 표정들입니다. 또 하나는 자살을 묘사한 TV 드라마의 의견진술 과정에서도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시사정보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사실 할 말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균형의 문제, 예를 들어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사항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그런 것이 규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 법의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계속 방송사에 주시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 관계자들에게 심의규정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라든지 한 뒤에 제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하게 되면 그냥 '재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넘기면서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드라마에서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상임위원 세 분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의규정을 개정할 때 자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아직 검토가 안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MBC-TV '남자를 믿었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박경신 위원

- 실제 화면을 보지 않고 텍스트만 봐서는 저는 '주의'도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송영상을 물론 메일로 보내 주시기는 했는데, 다운로드를 받으려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장기

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영상의 경우에 플래시 형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운로드를 받지 않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처럼 URL만 설정해 주면 거기에서 볼 수 있게 할 방법은 없는지,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해상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전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질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텍스트로만 봤을 때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극중에서 실제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는 장난을 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경신 위원님의 소수의견은 결정문에 꼭 표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MBC-TV '남자를 믿었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BC-TV '웃고 또 웃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주의'로 의결된 것 같습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맞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신 위원

- 만장일치로 의견을 주셨는데, '미친놈'이나 '인마' 이런 표현들이 방송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심의규정에는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심의규정에 '인마', '미친놈'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을 테고….

○ 권혁부 부위원장

- '욕, 비속어, 비하 발언, 거친 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예를 들어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인 코미디언 심형래의 옛날 코미디를 보면 북치는 방망이로 때리는 장면에서 항상 이런 욕설은 아니지만 거친 비하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다 제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수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경신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정리했다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 박 만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MBC-TV ‘웃고 또 웃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BS-TV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21’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소수의견으로 ‘권고’가 있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소수의견으로 한 분이 ‘권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주의’라는 말씀이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 엄광석 위원
 - 특별히 방송심의실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작성할 때 문안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건의 경우에도 ‘권고’의 소수의견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소위원회에서 ‘주의’가 몇 명이었고, ‘권고’가 몇 명이었는지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심의실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박경신 위원
 - 방송을 본 다른 사람들이 본인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지금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학부모로 가장한 것이고, 그러면 본인은 누구입니까? 학원 운영자입니까?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예, 그렇습니다.
- 박경신 위원
 - 학원 운영자를 인터뷰하면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목소리 변조가 되지 않은 채 방송되어 사람들이 알아봐서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은 잘 알겠지요. '저것이 내 인터뷰를 방송한 것이구나' 알 텐데, 그런데 본인이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의규정에 있어서 심의는 실제로 방송된 내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방송내용에 있어서 본인의 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 박경신 위원
 -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적 권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잠입취재를 하지 않고서는 거의 취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자이크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을 가지고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한 잠입취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소수의견을 제시합니다.
- 엄광석 위원
 - 이 건은 제가 '권고'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박경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위반의 정도가 법정제재를 내릴 만큼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저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결국 소위원회에서는 '주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두 분이 '주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이 안건을 놓고 '주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 드린다면 이 프로그램의 취재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의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느냐 상당히 고민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인격침해가 더 컸다는 점에서 '주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꼭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보낸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박 만 위원장
 - '주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권고'이 시고, 박경신 위원님은 '주의'는 너무 과하다는 소수의견이니까 그것을 명시하기로 하고, SBS-TV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21'도 '주의' 조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BC-AM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의'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그렇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듣기 거북한 욕이 여과 없이 방송돼서 '주의'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MBC-AM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기로 하겠습니다.

나. 방송심의에 관한 건 - KBS-2TV '동안미녀' 등 5건 (2011-15-166~170)

- 박 만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심의에 관한 건 - KBS-2TV 「동안미녀」 등 5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미녀'에 대해서는 방송소위에서 '경고'와 '주의' 의견이 각각 한 분, 그리고 '권고' 조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두 분 계셔서 전체회의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권혁부 부위원장
 - SBS의 '49일'과 '호박꽃순정'을 포함해서 3건을 같이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박 만 위원장

- '49일'과 '호박꽃순정'도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 것이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3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우리 사회는 '자살왕국'이라는 오명도 듣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드라마에서는 자살하는 내용이 설정에 포함된 예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자살장면을 묘사한 연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방영되고 있는 3건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자살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가 경고적 차원에서 방송제작 시장에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제재수위를 결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례적으로 3건 모두 소위원회의 의결주문을 붙이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광석 위원

- '동안미녀'는 자살에 관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의하셨던 '남자를 믿었네'에 나온 부분과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드라마를 심의하셔서 '동안미녀'는 자살과 관계가 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안미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광석 위원

- 제가 소위원회에서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드라마를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의규정을 가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놓고 본다면 '이런 드라마가 과연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극 전체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이나 양식에 따라 '아, 그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동안미녀'에 나오는 정도는 '권고'로 결정하더라도 방송사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위원회가 너무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권고'로 의견을 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엄 위원님은 '권고' 의견입니다. 구종상 위원님!
- 구종상 위원
 - 방송소위 위원님이 다섯 분인데 지금 네 분의 의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장낙인 위원
 -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 구종상 위원
 - 제가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주요 문제 내용과 적용조항만 대략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전에 지적받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처음 지적되었습니다.
- 구종상 위원
 - 방송소위에서는 '경고' 1인, '주의' 1인, '권고' 2인이었는데,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순이지요?
- 엄광석 위원
 - 예.
- 구종상 위원
 -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권고'와 '의견제시'인데, '권고' 수준이 두 분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구종상 위원님 의견은 '권고'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 박성희 위원
 - 이 드라마는 사전 대본이 있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작진이 임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었나, 물론 드라마 제작의 자율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드라마 출연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청소년들에게 미

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바르고 고운 말을 쓰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주의'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성희 위원님은 '주의' 의견입니다. 박경신 위원님!

○ 박경신 위원

- 방송시간이 언제였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밤 9시 55분~11시 15분까지입니다.

○ 장낙인 위원

- 그리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입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런데 제작하는 입장에서야 재방송이 언제 되는지 또는 케이블에서 몇 회 재방송이 되든지 이런 것들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방송심의는 사후심의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기권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최찬묵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묵 위원

-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지적된 예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앞에서 논의한 다른 프로그램의 제재 수위를 감안해서 이 건의 경우에는 '주의'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장낙인 위원님!

- 장낙인 위원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한데 아직 제재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권고'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현재까지는 '권고'가 세 분, '주의'가 두 분입니다. 김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택곤 상임위원
 - 이것을 심의하면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요즘 드라마들은 거친 표현과 욕설을 예사로 담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드라마 모두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생활에 미치는 드라마의 영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이 드라마가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속한 언어를 쓰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이나 다짐을 받는다든지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전제하에 가볍게 처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의견진술 당시에 담당PD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고'로 하고자 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권고'가 네 분이시고, 두 분이 '주의'입니다. 권혁부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저는 '경고'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권혁부 부위원장님 '경고', '주의'가 최찬목, 박성희 두 분 위원님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과 위원장인 저는 '권고'에 동의하겠습니다. 기권도 한 분 계셨습니다. 의결서를 작성할 때 소수의견과 기권의견이 다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BS-2TV '동안미녀'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에서 쓰는 대사를 가지고 앞서서도 법정제재를 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오늘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심의하

는 건도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 프로그램은 처음 지적받았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면 그때 엄중 조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런 형평의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런데 이 현상을 도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드라마 대다수가 거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가는 모두 법정제재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심의규정을 위반했으면 제재를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모든 드라마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모른 채 방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라든지 이에 대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두 분 의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SBS-TV '49일'과 SBS-TV '호박꽃순정' 2건인데, 이 2건이 자살 내용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49일'에 대해서는 결정유보 의견이 한 분이었고, '주의' 조치가 한 분, '경고' 조치가 두 분입니다. 역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결론이 날 사안입니다.

○ 박경신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실제로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까?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까?

- 안기섭 지상파방송심의팀 직원
 - 혼자서 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앞서 KBS 건도 자살과 관련해서 '주의' 결정을 해서 전체회의에서 조금 전에 의결했습니다만 이 2건 또한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모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심의규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서너 군데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전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제작자들에게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소위에서는 두 프로그램 모두 법정제재 이상 의견이 세 분이었습니다. 다만, '경고' 의견과 '주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앞서 KBS 건은 이것과 달리 중복된 부분, 즉, 다른 조항을 위반한 부분이 조금 덜해서 '주의'를 결정했는데 자살의 심각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저는 '경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3건의 프로그램 모두 동일하게 '주의' 조치를 통해서 제작진에게 그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만약 '주의'가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면 합의를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권혁부 부위원장님께서 '주의'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엄광석 위원님!

- 엄광석 위원
 - 지난번에 방송심의소위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드라마에서 '주의'와 '경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방송평가 상의 별점의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저는 '주의'로 결정했고 '주의'도 법정제재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드라마와의 형평성도 있어서 '주의'를 주장했었는데, '경고' 의견이 두 분이어서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자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자살이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처분을 가볍게 하자는 의미에서 '주의'를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도 의견에는 변함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구중상 위원님!

- 구종상 위원
 - 저도 '주의'에 동의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성희 위원님!
- 박성희 위원
 - 저는 자살뿐만 아니라 간접광고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된다고 봐서 '경고' 의견을 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지금도 '경고'입니까?
- 박성희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경신 위원님!
- 박경신 위원
 - 간접광고가 있기 때문에 '경고'에 동의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최찬목 위원님!
- 최찬목 위원
 - 저는 '주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장낙인 위원님!
- 장낙인 위원
 - 저도 '광고효과의 제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경고'로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경고'가 현재까지 세 분이고, '주의'가 네 분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저는 '주의'가 다수일 경우에 합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다수일 경우에 '주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라는 말씀이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예.
- 박 만 위원장
 - 김택곤 위원님!
- 김택곤 상임위원
 - 무겁게 '경고'로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경고'가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인 저도 다수 의견인 '경고'에 따라 가겠습니다. 여섯 분이 '경고'에 동의해 주셨고, 세 분이 '주의' 의견입니다.
- 박경신 위원
 - 방송사에 의결서를 보내실 때 의결서에 '경고' 의견을 가진 위원이 어떤 사유로 '경고'를 정했는지 이런 내용을 다 적지는 않으시지요?
- 박 만 위원장
 - 적습니다. 다수 의견의 근거를 먼저 적고, 마지막 부분에 소수의견을 내신 분들 의 의견을 적게 됩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런데 이번 건처럼 다수의견도 그 사유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기재하십시오. 박경신 위원님은 간접광고 문제가 중하기 때문에 '경고' 의견을 내셨다는 것을 꼭 부기해 주십시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그 부분은 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장낙인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지요?

- 장낙인 위원
 - 간접광고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지요.

- 박경신 위원
 - 그러면 또 세분화를 해야 하는데 저는 자살을 막으려면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자살시도가 무산되고 자살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줌으로 해서 도리어 자살을 막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보여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간접광고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경고'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경신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기재하십시오.

- 김택곤 상임위원
 - 간접광고는 사실상 방송사끼리 서로 정해진 룰에 따라 지켜야지 한쪽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말이 필요 없다, 그 점에서 간접광고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박경신 위원님과 저는 자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특히 영상매체에서 자살을 묘사하는 것, 그것이 자살미수든 자살이 이루어졌든 간에 시청자,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설사 제작자들은 스토리 전개상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살묘사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분명히 표기해 주십시오.

- 권혁부 부위원장
 - 각 방송사에 보내는 의결서에 위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제재조치를 했는지를 적어서 보내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에 대한 역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규범으로 봐서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났고

이러이러한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정도는 개괄해서 적시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의견을 전부 적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위원들의 모든 발언이 담겨져 있고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어 원하는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의결서에 개괄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위원 개개인이 개진한 소수의견을 이름과 함께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런 문제는 나중에 기타 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SBS-TV '49일'에 대해서는 '경고'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BS-TV '호박꽃순정'입니다. '호박꽃순정'도 역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해가 '경고' 두 분, '주의' 한 분이었고, 나머진 한 분은 결정을 유보하셨습니다. 우선 권혁부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저는 '경고'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엄광석 위원님!

○ 엄광석 위원

- 저는 '주의'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구종상 위원님!

○ 구종상 위원

- 저는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맨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 구종상 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이것이 다시 표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방송심의소위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님

들은 사실상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보시지 않은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영상을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사전에 봤을 것으로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희 위원

- 저는 '경고'입니다.

○ 박경신 위원

-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가 2개 나옵니다. '하림'은 알겠는데 레토르트 제품은 어떤 회사 것이 나오니까?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손수'라고 하는 식품기업입니다.

○ 박성희 위원

- 만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 박경신 위원

- 실제로 '손수'사의 로고가 화면에 비쳤던 것이지요?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예.

○ 박경신 위원

- 그리고 등장인물도 대사를 통해 화면에 비친 회사의 제품을 가리키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그렇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저는 '경고' 의견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최찬목 위원님!

- 최찬목 위원
 - 저는 '주의' 의견입니다.

- 장낙인 위원
 - 저는 '경고'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저도 '경고'입니다.

- 구종상 위원
 - 저도 다수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다수의견이 '경고'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도 다수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세 분이 소수의견이신데 그것을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BS-TV '호박꽃순정'은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SBS-TV '김정은의 초콜릿'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소위에서 '경고' 의견이 두 분이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이 두 분이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소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면 해당 프로그램에 태블릿PC 제품을 진행자인 김정은 씨가 갖고 나와서 유명 연예인과 전화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시종일관 연예인 얼굴 동영상이 뜨는 그림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간접광고라고 하면 슬쩍 화면에 스쳐가도 문제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간적으로도 5분 이상 두 사람이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간접광고로는 이례적으로 장시간,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방송소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정제재 중에도 비교적 무거운 수위인 '경고' 두 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두 분으로 네 분이 법정제재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경고'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사이에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게 되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권혁부 부위원장님 의견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시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시청자에 대한 사과'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엄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엄광석 위원
 - 저는 그때 '경고'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고'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심의했을 때 처음에는 선정성이 문제가 됐다가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태블릿PC를 통한 간접광고 부분을 많이 논의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담당 프로듀서의 의견진술을 들으면서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받을 만큼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고'로도 충분히 징계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경고'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구종상 위원님!
- 구종상 위원
 - 전체적인 네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사안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 박성희 위원
 - 처음에는 진행자의 선정적인 의상과 광고효과의 제한, 2가지 부분 모두 논의가 되었는데 진행자의 의상 부분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안 됐고, 오히려 간접광고 부분이 지나치게 도드라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을 냈습니다만 '경고'에도 합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경고'가 두 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한 분입니다. 박경신 위원님!

- 박경신 위원
 -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상표를 가리는 것이 가능한데 자동차가 드라마에 나올 경우에는 보통 제작관행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동안의 심의관행은 어땠습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소품이나 장비들은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해당 제품을 어떻게 비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비추느냐, 구체적으로 비추느냐, 반복적으로 비추느냐, 3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무처에서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립니다. 가령 자동차가 등장하는 경우 주인공이 타고 내리는 장면에서는 굳이 로고나 엠블럼이 노출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가까이서 잡지 않고 멀리서 타고 오는 장면 정도로 찍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장면을 전체 화면에 풀샷으로 잡는다는지, 이런 의도성이 있다면 그것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업체와의 계약 관행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경우 보통 돈을 받고 특정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그 부분은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박경신 위원
 - 갤럭시탭에 대해서 정식 계약이 있었다고 제작진이 밝히고 있고, 그리고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의도를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볼 수 없는 한 결국에는 정황증거로 의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이야기가 더 진전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가 해당 업체와 간접광고를 정식으로 계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간접광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새롭게 계약을 맺지 아니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이 방송에 노출돼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 구종상 위원
 - 이런 사례로 이 프로그램이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없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이 사이즈로 나오는 태블릿PC는 이 제품밖에 없는 것이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아이패드와 2개인데 통화기능이 있는 것은 갤럭시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기능을 차별화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경신 위원
 - 저는 '경고'로 하겠습니다.
- 최찬목 위원
 - 저도 '경고' 의견입니다.
- 구종상 위원
 - 저도 '경고'로 하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죄송합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하겠습니다.
- 장낙인 위원
 - 제품의 로고가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경고'로 하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저도 '경고'로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위원장인 저도 다수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을 내신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의 소수의견을 잘 반영해서 의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TV '김정은의 초콜릿'은 '경고' 조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신료 인상 공청회 관련 보도를 한 KBS-1TV 'KBS 뉴스9' 건입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경고'의 법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분이었고, '권고'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두 분이어서 합의를 못 본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부 부위원장님!

○ 권혁부 부위원장

- 사안을 설명드리면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를 보도하면서 여당 측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고 야당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소위에서는 과연 양적 불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던 중에 이 보도만을 가지고는 심의가 곤란해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다른 KBS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적절한 것이 없어서 이것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의견진술 당시 참석한 KBS 보도국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수신료 인상에 관한 찬반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는 방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것을 결정하게 될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어떤 찬반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아젠다로 삼아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청회 당일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야당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가 바로 퇴장을 해서 야당 측 의견을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KBS가 의도적으로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다는 공청회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봐서 저는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엄광석 위원님!

○ 엄광석 위원

- 그때 방송소위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권고' 의견이었습니다.

○ 엄광석 위원

- 그대로 '권고'로 하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KBS 뉴스9'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상당한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방송심의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언하겠습니다. 4월 18일 국회 문방위 공청회는 2시간 43분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8분 정도는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과 민주당 김재윤 간사 간의 논란, 그리고 2시간 20분은 당초 예정대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공술인으로 참석한 학자들의 발언이 있었고, 학자분들 6명이 고루 찬반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KBS는 이미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날 공청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에서 그 이유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공술인들입니다. 그런데 KBS는 공청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술인 6명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단 10초간만 방송하고, 나머지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절대적 찬성한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절반은 공청회 참석을 거부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방송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한 것이고, 더군다나 수신료 인상은 KBS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보도를 하면서도 상당히 자제를 했어야 옳았다고 보며, 앞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KBS 뉴스'는 프로그램 아이템 하나의 평균 방송시간이 1분 20초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은 2분 20초나 방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KBS 보도국 차원에서의 취재지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취재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방송심의소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을 위해서 해당 보도화면을 한번 시청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구종상 위원

- 민원은 어디에서 제기한 것입니까?

○ 김형성 지상파방송심의팀장

- 개인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언론 관련단체에서 활동가로 있는 분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러면 한번 보시지요.

○ 김택곤 상임위원

- 보시고 나서 필요하다면 보충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박 만 위원장

- 전부 보셨지요? 지금까지 두 분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구종상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종상 위원

- 방송소위에서 두 분은 '권고', 두 분은 법정제재, 나머지 한 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장낙인 위원

- 제가 그때 소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 구종상 위원

- 저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권고'가 세 분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 박성희 위원

- 공정성 심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택곤 위원님처럼 공청회와 관련된 배경 정보를 입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을 봤을 때 약간의 균형성을 상실했다, 그러나 보도가 공정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것은 자사의 이익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충분한 장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공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별도로 기울였다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경신 위원님!

○ 박경신 위원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균형성 문제이고, 제9조제4항은 방송의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공적이어야 할 방송이 자사에게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방송이라는 공기(公器)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성향이나 내용의 정체성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프라임타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은 정말로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자사에게 유리한 이런 식의 내용을 프라임타임 뉴스로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하느니 차라리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공청회를 취재보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청회를 특별히 선택해서 취재보도한 것도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법정제재 의견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최찬묵 위원님!

- 최찬묵 위원
 - 저는 '주의' 의견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장낙인 위원님!

- 장낙인 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해설이나 논평에 대한 공정성은 논의의 대상이지 심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뉴스보도의 공정성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스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것이 균형성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제9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방송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의 보도를 했다고 판단해서 저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김택곤 위원님!

- 김택곤 상임위원
 - 저는 의견진술 때 보도책임자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의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주의'로 하되, 그 대신 이 보도를 취재한 기자는 적어도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주의'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병과한다는 말씀입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1차 취재를 한 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이 경우에는 저도 의문인데 이런 사례가 가능합니까?

- 박 만 위원장
 - 가능하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병과는 가능합니다만….

- 권혁부 부위원장
 -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하는 병과하는 경우는 봤는데….

- 장낙인 위원
 - '주의'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병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것이 어렵다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하겠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바꾸고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시
는 것입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금 결론이 안 나는데 '권고' 의견이 세 분이고,
'주의' 의견이 두 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이 세 분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혹시 두 분이 의견을 바꿀 수 있는지….

- 박경신 위원
 - 의견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주의'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
계'를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의'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병과하는 안에 대해서 박성희 위원님과 최찬목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저도 '주의'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병과하는 것으로 낮추는데
동의합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예, 좋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장낙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장낙인 위원

- 아닙니다. 저는 동의 안 하겠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런데 아직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주의' 의견을 내신 분들은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 최찬묵 위원

- 저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 박성희 위원

-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회 규칙에 가부동수일 때에 관한 내용은 없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 박 만 위원장

- 이것은 징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반인 다섯 분은 동의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법정제재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5명이 되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렇지요. 법정제재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법정제재는 이미 결정됐고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법정제재를 의결하기로 했는데 행정조치 의견을 밝힌 세 분이 계속 그 의견을 고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제재로 결정한다면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세 분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엄광석 위원
 -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성희 위원
 -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위원장님 의견에 양해하신다면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법정제재를 할 것인지,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법정제재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재수위를 '주의'로 할 것인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할 것인지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 구종상 위원
 -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의사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 박 만 위원장
 - 기권하시면 되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법정제재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수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 장낙인 위원
 -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권고'나 행정제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법정제재로 의견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법정제재 의견을 말씀하신 김택곤 위원님, 장낙인 위원님, 최찬목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박경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신가요?
- 박경신 위원
 -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안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표가 남으니까 그중에 두어 분이 어차피 법정제재할 것이면 자기는 이것을 선호한다면...
- 구종상 위원
 - 그러면 저는 처음에 '권고' 의견을 밝혔지만 법정제재로 간다면 '주의'에 표를 던지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러면 해결이 됐지요.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주의'가 세 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세 분입니다.
- 엄광석 위원
 - 그러면 저도 '주의'로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엄광석 위원님도 '주의'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주의'가 현재 네 분인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이신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 장낙인 위원
 -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 박 만 위원장
 - 위원장님 저는 '주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3명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이고, 4명이 '주의'면 중간 제재수위인 '경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하시면 또 표가 모일 수 있으니까...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저를 포함해서 '주의'가 다섯 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세 분, 그다음에 권혁부 부위원장님은 의견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가 다섯 분이므로 KBS-1TV 'KBS 뉴스9' 수신료 인상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장낙인 위원
- 10분 쉬시지요.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6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제재조치에 관한 건 - OCN '스파르타쿠스 : 갓 오브 아레나' 등 8건 (2011-15-171~178)

- 박 만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제재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동 건은 유료방송 심의 건인데, 먼저 '스파르타쿠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소위에서 세 분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두 분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제외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즉, 소위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만장일치였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소위원회의 건의사항과 의견이 다른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구종상 위원
- 사례를 한번 볼 수 없습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그것을 다 보자면 오늘 심의가 너무 지연됩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문제가 된 장면 위주로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지금 심의하고 있는 안건이 171호, 172호 2가지입니다.

- 구종상 위원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상파방송과 비교해서 유료방송에 대한 심의는 대부분 합의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는 것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네. 보시면 압니다.

(동영상 시청)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렇게 편집해 놓으니까 리얼리티가 떨어집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아무래도 스토리와 함께 이어서 보셔야 하는데….
- 최찬목 위원
 - 아까 논의한 것과 다른 것입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아까 논의한 것은 프리미엄 채널입니다. 프리미엄 채널은 비밀번호를 넣고 결제를 하고 나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 케이블TV의 특성을 감안해서….
- 권혁부 부위원장
 - 보고자 하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방송 개념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프리미엄 채널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케이블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케이블 가입자에게 매월 얼마씩 내도록 하는 채널입니다. 그것만 내면 볼 수 있는 것인데 개념을 유료라고 하니까 볼 때마다 또 돈을 내고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 박 만 위원장

- 어쨌든 지금은 OCN과 CH.CGV에서 방송한 것에 대해 심의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상을 보셨는데 방송심의소위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였고, 그다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까지 병과하자는 의견이 세 분 계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위의 결론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의 결론과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종상 위원

- 소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OCN에서 방송된 171호와 CH.CGV에서 방송된 172호, 2건 모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CH.CGV '쌍화점'에 대한 것입니다. '쌍화점'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CH.CGV '쌍화점'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H.CGV '주말N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박경신 위원

- 정사 장면 등을 편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동 건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들에 나오는 정사 장면들만을 편집하여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입니다.

○ 최찬목 위원

- 편집을 안 좋게 했다는 것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편집했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을 걸러냈다는 취지가 아니라, 안 좋은 것만 모았다는 것입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일부는 삭제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편집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상파 채널의 경우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든지 '주의'나 '경고'에 대해 무척 부담스럽고 무겁게 생각하는데, 유료 채널, 특히 케이블TV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유의하고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 점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별도의 의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도록 준비하라고 사무처에 지시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등록 PP에 대해서는 제재가 별 의미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과징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 구종상 위원
 - 개별 PP는 재허가가 몇 년이지요?
- 장낙인 위원
 - 재허가가 아니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승인과 등록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등록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일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닷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법정 제재를 결정해 놓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의 절차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CH.CGV의 '주말N영화'에 대해서는 일단 소위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결정했으므로 소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CH.CGV '주말N영화'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NTV '동물적 본능'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CNTV '동물적 본능'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CNTV '올 댓 시네마'인데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경고'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CNTV '올 댓 시네마'는 '경고'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E!TV

‘결혼은 미친 것이다2’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심의소위의 의견은 ‘주의’가 다수이고, ‘권고’가 한 분이었습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뒤에 178호도 같은 건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예. 뒤에 178호 SBS플러스 ‘결혼은 미친 것이다2’ 역시 같은 내용이고 채널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한 소위의 결론은 다수의견대로 ‘주의’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동 건에 대해 아마도 ‘권고’로 소수의견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처음에는 저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 엄광석 위원
 - 제가 소수의견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물론 이것이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의’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부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서 ‘권고’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저도 방송을 보지는 않았는데, 노출은 없는 것이지요?

- 엄광석 위원
 - 노출은 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권고’ 의견이십니까?

- 박경신 위원
 - ‘권고’ 보다 낮은 것은 없습니까? 저는 동 건의 경우 제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

됩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러면 '문제없음'입니다.
- 엄광석 위원
- '의견제시' 아닙니까?
- 박 만 위원장
- '권고'나 '의견제시'는 비슷한 단계의 조치입니다.
- 장낙인 위원
- '문제없음'이지요.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박경신 위원님의 의견은 '문제없음'입니까?
- 박경신 위원
-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을 했고, 방송시간도 보면….
- 박 만 위원장
- 낮에 방송했습니다.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렇다면 저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예. 박경신 위원님은 '권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위에서 제가 '권고'로 하려다가 '15세이상시청가' 등급에서 마음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맷을 조금 바꾸고 시청 대상을 특화한다면 건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부부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

서,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면 오히려 건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고'로 의견을 냈었는데,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은 적절치 않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에서나 보편적 시청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으로 적합하냐는 점을 법정제재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여기 보면 부부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은 섹슈얼 마사지를 해라, 그리고 여자의 경우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위행위를 해라,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방송에서 내보낼 수 있는 내용인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차별 없이 봐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이라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15세에서 17, 18세 청소년들은 한창 자위행위의 유혹을 받는 시기인데 그것이 건강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의사들의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에서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15세 이상은 봐도 된다고 한 것은 문제가 큼니다. 등급제 적용도 성인들만 볼 수 있는 '19세이상시청가' 정도로 했다면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로 하게 된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권고' 의견을 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권고' 의견을 내신 엄광석 위원님과 박경신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나머지 분들은 '주의'에 동의하셨으므로, 의안 177호와 178호 2건은 모두 '주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목 위원

- 죄송합니다만 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먼저 이석하겠습니다.

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 On Style '스타일매거진 2011' (2011-15-184)

○ 박 만 위원장

- <의결사항 자>도 방송심의 안건인 관계로 <의결사항 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 On Style 「스타일매거진 2011」'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안 184호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주의'를 결정한 것이지요?

○ 김양하 방송심의실장

- 예.

○ 박 만 위원장

- 동 건은 광고심의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주의'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 184호 On Style '스타일매거진 2011'은 '주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이의신청 심의 및 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요청에 관한 건 (2011-15-179)

○ 박 만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이의신청 심의 및 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9일 처음으로 정기회의를 할 때 당시 소위원회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급한 사안이 생기면 소위원회 대신 상임위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소위원회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그 사이에 상임위원들이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관계로, 오늘 동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박종훈 유해정보심의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훈 유해정보심의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제6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의결주문은 '<제1안> 기각(이유없음)과 <제2안> 인용(시정요구결정 취소)로 의결한다'입니다. 경과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0일 일반인 신고가 있었고, 5월 12일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접속차단)'을 의결하셨습니다. 2011년 5월 27일 트위터 계정 정보제공자(송진용)가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2011년 6월 3일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당사자 의견청취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7일 당사자 '의견진술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인의 주장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신심의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는 위법하다라는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상 하자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요구한 URL은 심의대상인 '정

보'가 아닌 '정보체계'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4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시정요구 대상인 트위터 ID는 사회일반에서 널리 통용되는 수준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로서 심의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시정요구 이행 정지 요청 내용은 시정요구 이후 트위터 계정 이용자인 본인과 팔로워(Follower) 및 일반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트위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정요구의 효력 또는 이행의 정지를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붙임>은 총 6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동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이의신청 사유들을 전부 살펴봤는데 신청인의 이의신청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각하는데 동의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의신청 사유 중에 쟁점이 될 만한 것은 트위터 계정 그 자체가 심의대상 정보인지 아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만 정리되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우선 제가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동 건을 의결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지금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관련규정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와 관련이 있는데, 그때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아 동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 박 만 위원장

- 그렇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것이 원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통신심의소위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결정한 날은 상임위원 3인도 호

선하고 오후에 취임식도 개최한 날인데, 당연히 소위원회도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해서 구성해야 하므로 아직 구성 전이지 않았습니까? 전체 위원들이 동의해서 위임을 하면 그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또 전체 위원들이 동의하면 규칙까지 개정할 수 있는데, 절차상의 흠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경신 위원

- 물론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데,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칙에 상임위원회가 그러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위원회는 법이 그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소위원회를 이리러리한 이유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저도 그때는 관련 규칙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대신한다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규칙을 위반한 점이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위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신심의소 위원회를 한다면 통신심의소 회의에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해서 결정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최찬목 위원님도 먼저 이석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누구한테 위임을 하고 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신심의소위원회라는 법정기구의 권한을 세 분의 상임 위원들에게 위임한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봅니다.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5월 9일 전체회의에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동 건은 전체회의에서 '각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소위원회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방송·통신·광고심의소위원회를 상임위원 3인에게 위임한 것이지, 상임위원회에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의결서와 회의록, 안건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상임위원회에 위임했던 상임위원들에게 했던 마찬가지로요. 어쨌거나 규칙에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그렇게하기로 의결하면 그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매일 위원회에 출근하는 상임위원이 세 사람이므로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3인에게 소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박경신 위원

-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2010년 6월 9일 최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 박 만 위원장

-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5월 9일 의결한 것은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절차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것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두었을 경우에 제10조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 박경신 위원

-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두기로 규칙에 만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 박 만 위원장

-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 장낙인 위원

- 아까 보고자가 5월 9일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5월 9일 전체회의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안건이 상정되었고, '각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방송·통신·광고심의소위원회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할 것을 의결'하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구성도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3인으로 각 3개의 소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법 그 자체도 상식의 범위를 뛰어 넘으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준하는 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상임위원 3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도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각 소위원회의 직무를 상임위원 3인이 처리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해당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 현재 있는 규정에 반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박경신 위원

- 기본적으로 그 당시 위임을 상임위원들에게 했던 상임위원회에 했던 무슨 이름을 붙여서 했든지 간에, 지금 규칙 등에 전체회의에서 심의 권한을 다른 데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소관직무를 위임하려면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대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 뿐이지, 만약 그렇게 위임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위원 9인 중에서 미리 의견을 다른 분한테 위임하고 집에 가도 남은 분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사로 따지면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회의에 직접 들어와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임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 3인에게 심의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으로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또 다음 처리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런데 심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심의는 위원 9인이 전부 직접 참여하든지, 아니면 기권을 할 경우 남은 사람들이 성원을 구성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법이 정한 대로 소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동 건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임 불가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에 합당하게 이 사안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하여튼 이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참작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중상 위원

-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택일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할까요?

○ 박경신 위원

- 표결하기 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을 참고자료로 배포했는데, 모욕죄의 위헌성,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정책적 고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졌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나중에 논문으로 게재한 것입니다만, 당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방송 소유규제 개정안도 있었지만 사이버 모욕죄 제정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모욕죄에서 친고죄 요건을 없애서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하지 않아도 임의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도 여기 자리에 놓여있는 박 위원님의 논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박 위원님 개인이 주장하는 논지이지요. 그 논문을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참고 정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다 봤습니다. 위원 개인이 참고자료로 회의에 올려놓은 논문을 또 회의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는 사례는 처음 봅니다.

○ 박 만 위원장

-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 이의신청 문제에 국한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경신 위원

- 동 이의신청 건과 관련해서 제 논문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내용을 참고해 달라는 정도로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 박경신 위원

- 제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해 주시지요.

○ 박경신 위원

-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욕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했을 때에만 그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식아, 여태 연락도 없었냐’라는 식으로 말할 경우, 친구들 간에 도리어 친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욕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엇이 욕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맥락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욕설의 대상이자 모욕죄의 당사자라고 상상되는, 저는 상상이라

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나서서 '이것은 그분에게 모욕적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경찰에서도 가만히 있고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이것은 그분에게 모욕적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 우리 사회에, 또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못 막고 청와대도 막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막겠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시정요구를 한 이후 현재 그와 관련한 유사 계정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불법인지 논란을 벌이기 이전에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 할리우드 스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집을 샀는데, 누군가 그것을 찍어서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무려 5,000만 달러의 손해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미 소문이 나서 약 50만명이 그 정보를 퍼 나르게 되어서 그 소송이 유아무야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유사 계정이 하나 뜨면 시정요구를 하고, 또 몇 개 뜨면 시정요구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마치 제비가 날아다니는데 매미채를 들고 휘젓고 다니는 듯한 양상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러한 욕설이 담긴 계정이 용인할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해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2MB18nomA'가 용인할 수준의 욕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판단을 해야 하겠지요.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욕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공간을 더럽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과 관련된 본질을 논의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채를 들고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급히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상임위원님의 의견은 순수한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로운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흥기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실체가 있다면 대응해야 합니다. 예로 드신 그 배우가 그것을 소송하니 인터넷에서 퍼졌을지 소송을 안 해도 퍼졌을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동 건도 만일 우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용인한다면 앞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감정적으로 어느 상대를 선택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안의 경우 자기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로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저급한 방법으로 비판한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사무처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이의신청인의 주소, 연락처가 없는 이의신청서를 받았는데, 그런 이의신청서가 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요청해서 접수했습니다. 당사자의 말은 자기가 주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하는지 몰랐고 단순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자기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연락처와 주소를 쓰지 않고 실수로 빠뜨렸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받아보니까 그 신청인 이름 바로 밑에 가나다 순으로 세 사람이 올라와 있던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의신청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 박경신 위원

-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인이 아니라 연락처를 남겨 놓은 것이겠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그 사람들이 연락처를 남겨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실무진들에게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이의신청 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애초에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가 빠진 관계로 대신 그 단체들의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고 저희한테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함께 대응할 단체들의 연락처를 명시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빠뜨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세 단체의 이름과 연락처,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봤을 때 그 트위터 계정은 해당 단체들의 공동소유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인과의 관계를 논의해 보았습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공동계정이 아니고 자신만의 단독계정이라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공동대응하겠다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렇다면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사유로 내세운 점에 비춰 볼 때 그 동기도 굉장히 불순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안이 용인되고 최소한 이런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트위터를 띄웠다는 것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판단컨대, 이러한 사안이 설사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방임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견되는 역기능들을 추정해 봤을 때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 그것이 누구의 사사로울 이익을 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특히 SNS가 새로운 의사전달 방법으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정한 대처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이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9명의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 봐서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논란은 계속 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언어도 단에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 신청인과 함께 시민단체가 공동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시민단체들이

‘18nomA’라는 욕설을 쓰는 것조차도 좋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점은 양해를 못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에 의해 하나의 계정 사용자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고 함께 변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위원장님께서서는 국가원수를 폄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 다른 의견입니다. ‘18nomA’라는 욕설을 대수롭지 않게 계정에 띄운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앞에 국가원수가 들어있는지, 아무개를 언급했는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상임위원님 말씀 중에 꼭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정요구 조치가 부당하므로 그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기왕 들어온 것이니까 제가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실무진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인이 반드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위원회에 떳떳하게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요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후에 보니까 본인은 안 나오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거론한 최초 이의신청서에 등재되어 있던 3개의 단체와 관련해서 판단해 봤을 때는 그 이의신청인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만한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와서 소명하지 않는 것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아까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 장낙인 위원

- 우선 매우 기본적인 문제로 트위터 ID나 계정이 심의대상이 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조에 ‘정보’라 함은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 지금 이의신청자가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논란이 된다면 유권해석은 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지금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인용해서 이것을 '정보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검토의견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보면, '정보'에 대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보체계'라는 것도 숫자, 문자, 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낙인 위원

-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이의신청인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 또는 지식'과 관련해서 반론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해당 트위터 ID 자체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낙인 위원

- 위원들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지요. 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이렇게 법과 관련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처에서 이렇게 판단한다, 위원들이 판단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것이 심의대상인 '정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통신심의실장이 말한 바와 같이 규정에 의하면 분명합니다. 인터넷에 뜨는 것은 다 자료입니다.

○ 장낙인 위원

- ID가 정보가 아니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런 식으로 한다면 ID를 가지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장낙인 위원

-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할 때 과연 ID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인터넷 화면에 뜨는 것은 다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후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하겠지요. 모든 것은 거기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를 통한 시정 요구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논란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면….
- 박 만 위원장
 - 그것은 통상적일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것이 규칙에 있는 것인데 그 규칙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고, 전체회의에서는 적어도 그것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박 만 위원장
 - 그 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반복이 되는 논란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이것은 다수결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 박경신 위원
 -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쓴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외부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의신청인과는 오늘 적법하게 연락을 했습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예, 정확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본인과 통화까지 했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안전에 욕설정보 심의사례로 올라와 있는 것이 시정요구를 한 사례만 있는데, 혹시 과거 욕설정보 심의사례 중에 '해당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례도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 주시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경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가 위촉권자에 관련된 욕설이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 박경신 위원
 -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 박경신 위원
 - 아니지요. 그런 의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비춰질 지에 대해...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 박경신 위원
 - 아니지요. 외부에서 어떻게 보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언할 때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다 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발생한 것부터 조치해야 한다, 그렇게 심의·의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다'라

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촉권자에 관한 욕설이므로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지요?

○ 박경신 위원

-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틀림없이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제가 지적한 부분에 언급이 되었으면 회의록에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 박경신 위원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 박경신 위원

- 지금 누구 마음대로 회의록에서 누구 발언을 삭제하고 말고 하자는 것입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박경신 위원

- 저는 삭제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있다고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 엄광석 위원

- 토론을 하자고 해서 각자 의견을 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우선 심의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아까 외국의 사례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우리가 외국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의 성숙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두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아까 지상파방송에서 비슷한 화면이 나와서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지상파방송 건의 경우

‘권고’로 하자고 했던 것은 그것이 단순 실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돼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접촉차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논의를 빨리 종결시키시고 위원 각자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구종상 위원님.

○ 구종상 위원

-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이념적 수준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국민의 보편적·정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임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단일가족이 확장된 개념이 국가이고 대한민국인 것인데, 이를테면 조그마한 가족 사회에서도 아버지를 지칭해서 ‘18nom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물며 명백하게 특정인을 지칭하는 욕설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건은 굳이 특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 박성희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욕설이라는 차원보다는 인터넷의 건전한 문화를 함양하는데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한 만큼 또 악플 문화도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실제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용인할 만한 표현이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심의위원회가 우리의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욕설’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욕하는 자유

를 표현의 자유라고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선량한 의도가 이 안에 보인다면 제가 다른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그보다는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하는 욕설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데 동의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제가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네 분의 위원님들이 '기각'의 의견을 주셨고, 세 분의 위원님들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살펴보건대...

○ 박경신 위원

- 결정하시기 전에 새로 들어온 자료가 있으므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욕설정보 심의 관련 '해당없음' 결정사례가 들어왔는데, 사례 1번을 보시면 '지랄, 염병, 새끼들'과 같은 표현들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안과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경신 위원

-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절차상이나 내용상 우리가 이것을 시정요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건은 현재 출석위원 8인 중 5인의 동의로 과반수에 충족하기 때문에...

○ 박경신 위원

- 잠깐만요. 회의를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 토론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를 보셔도 '새끼'라고 표현하며 사람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을 지칭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 박 만 위원장

- '새끼'라는 표현의 의미와 이것은 또 다르지요. 어쨌든 동 건은 다수 의견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더 논의해 봐야 감정적으로 대립

만 되고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동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 극도의 증오나 반대와 같은 매우 극렬한 감정과 의견을 표명할 때 그러한 욕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봐야지, 단순한 욕설로 본다면….

○ 박 만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음 의안이 또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말씀해 주시지요.

마. 욕설정보 심의에 관한 건 (2011-15-180)

○ 박 만 위원장

- <의결사항 마> ‘욕설정보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의안 180호인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고받은 것이 총 25건인데 그중에 5건은 접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하’이고, 나머지 20건 중 1건은 ‘이용해지’와 나머지 19건은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건의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까지 논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토론해 온 경과를 비춰 보면 이 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별도의 의견을 여쭙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다수결로 표결하시겠다고 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만, 드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더라도, 다수결로 보완될 수 없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상의 하자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일이라면, 인터넷 공간을 서로 패싸움을 벌이고 욕설이 난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가꿔서 정해진 룰에 따라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바람직한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도적인 책임이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사 한쪽이 다소 억울해 한다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아, 그래. 저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규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설득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가 ‘18nomA’라는 표현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언론들도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국민들의 가이드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려고 해도 이의신청인이 나와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이의신청서도 성의 있게 쓰긴 썼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리도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상임위원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트위터만 살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또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결과적으로 상임위원님께서 이것을 그러한 속성을 지닌 사안이니까 인터넷에 맡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박경신 위원

- 욕설이 왜 나오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 권혁부 부위원장

- 생각 많이 했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지금 국가에서 차단하려 하고, 또 지난 2008년, 2009년 동안 검찰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나서서 차단을 하니깐 이러한 욕설정보가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키코(KIKO) 폭탄 맞은 중소기업 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환을 정책이 위험하다고 쓰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수백억 부도 맞고 키코(KIKO) 폭탄 맞아서 자기 인생 영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이 나오지요. 이런 사람들은 국가정책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과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도 또 차단해 버리면 더 욕이 나오지요. 우리나라 인터넷 공간에 욕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욕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제가 심하니까 욕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규제 때문에 욕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 박 만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워크숍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실효성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MB18nomA 아니다'와 같은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는 그냥 '2MB18'이라고 나와도 다 차단하실 것입니까?

○ 박 만 위원장

- 이만 진행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

- 위원장님, 동 건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이 치열하니까 관련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형식을 통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조금 인내하고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 구종상 위원

- 그러한 분위기를 흡수하는 장치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동안 국회 등의 일정이 있어서 못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의안 제180호 '욕설정보 심의에 관한 건'은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전 안건에서의 의사와 다른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모두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우리가 좋은 기회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의안 제180호 '욕설정보 심의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바. 음란정보 심의에 관한 건 (2011-15-181)

○ 박 만 위원장

- <의결사항 바> '음란정보 심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종훈 유해정보심의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훈 유해정보심의팀장

- '음란정보 심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음란정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의결주문은 '해당 정보 3건에 대하여 이용해지 1건, 삭제 1건의 시정요구 2건과 해당없음 1건으로 의결함'입니다. 경과사항으로는 2011년 6월 3일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심의번호 <1>번과 <2>번은 해당 정보가 웹하드 가입 유도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정보로서, 연결되는 페이지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 차목에 따라 '이용해지' 및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심의번호 <3>번은 해당 정보가 음란·선정성 정보로 신고되었으나, 정보내용이 변경되어 심의규정상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난 통신심의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연관성이 명백하고, 링크를 제공하는 정보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해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속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요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제공하는 정보 자체의 선정적 이미지나 자극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알려주고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웹사이트와 동일시하여 시정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링크 정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것은 <붙임>의 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 성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중 하나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음란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데, 음란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매개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 박경신 위원

-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그것을 클릭한다고 해서 그러한 웹하드 내 음란물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웹하드에 가입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또는 성인인증을 거치는 경우에만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서 반대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링크를 걸어놓고 그 링크를 누르면 곧바로 음란물이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것도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클릭을 해도 성인인증이나 웹하드 가입 절차 등을 거쳐야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시정요구에 대해 반대했던 것입니다. 웹하드 가입 유도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정에 아직도 반대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엄 위원님.

○ 엄광석 위원

- 저도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구종상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신심의소위 위원장이신데 의결주문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 구종상 위원
 - 예.
- 박 만 위원장
 - 박성희 위원님.
- 박성희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장낙인 위원님.
- 장낙인 위원
 - 심의번호 제2011-15-181호-002에 보면 웹하드 가입 유도 페이지로 링크된 것으로 나왔지요? 웹하드 가입 유도 페이지를 링크시킨 것이므로, 지금 박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처럼 음란정보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 박종훈 유해정보심의팀장
 - 예, 맞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 심의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로는 음란한 것이 없고, 가입을 해야 음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장낙인 위원
 - 연결만 시켜줬다고 해서 그것이 음란한 사이트인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장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 장낙인 위원
 - 예.
- 박 만 위원장

- 김택곤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우선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 설사 아무리 불법이고 유해한 정보일지라도 우선 권리보호 차원에서 사전 진술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을 최소화시키자라고 해서 사전 진술제도를 검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제 하에 불법·유해정보인 성인사이트를 없애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이 예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유해정보라고 보고 동의를 하겠습니까만, 지금 올라온 것이 몇 건입니까? 이것 하나입니까?

○ 박 만 위원장

- 3건 중에 2건은 시정요구로, 나머지 하나는 '해당없음'으로 건의되었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사전 진술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개개인이 하나씩 들여다봐야 하는데, 현재 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고도 안 합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지금 심의안건의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동 건은 해당이 안 되고, 그 결과는 이번 주 중에 정리해서 다음 주 쯤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다섯 분이시고, 두 분은 반대이시고, 김택곤 위원님께서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여기 보이는 건에 관련한 동의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러면 다수의견이기 때문에, 의안번호 181호 '음란정보 심의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사.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2011-15-182) (비공개)

아.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 (2011-15-183)

○ 박 만 위원장

- <의결사항 아>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동 건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동 건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적은 없고, 다만 예산안 심의할 때 동 내용이 개괄적으로 포함된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지난 제1기 위원회 때 의결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계실까봐 차제에 이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의안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통신심의기획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배 통신심의기획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1년도 위원회 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에 대한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와 사업자 간의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규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의결주문은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정보제공사업자에게 시정요구한 건수는 3만 9,000여 건이고, 이 중 6개 포털사가 1만 1,000여 건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주요포털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백한 불법정보라 하더라도 최초인지에서 심의 및 시정요구까지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터넷 정보의 방대함과 빠른 전파력 등을 감안할 때 시정요구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위원회 심의만으로는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인지단계에서 사업자가 문제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규제 대상사업자입니다. 첫 번째는 주요 6개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제도 정착 후 P2P, 웹하드 사업자 등으로 공동규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 포털사업자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케이티하이텔, 하나로드림이 되겠습니다. 공동규제 대상정보는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정보, 명예훼손 등 사업자 심의요청 정보, 방통위 등 관계기관 심의요청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정보, 해외제공 불법 정보 등을 제외한 전체 불법·유해정보가 대상이 되겠고, 4페이지의 박스 안에 예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규제 절차입니다. 심의대상 인지를 첫 번째 단계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무처 검토, 세 번째는 우리 위원회가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을 개발해서 여기에 안건을 올리면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율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자율조치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통신심의소위를 거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억 5,000만원, 장비를 구매하는데 8,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자와 협의를 6~7월, 2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사업자 선정 및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붙임>에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안)에 관한 세부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통신심의실장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 장낙인 위원

- 공동규제 절차에서 심의대상 인지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예, 그렇습니다.

○ 장낙인 위원

- 그다음에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유도하겠다는 안이지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예.

○ 장낙인 위원

- 이 안대로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권을 사업자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정보통신망법에 사업자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역시 약관을 통해서 건전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인지가 됐을 때 심의 건을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라, 1차적으로 사업자가 자기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에 대해 그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낙인 위원

- 그것은 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예.

○ 장낙인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대상을 인지하고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자에게 자율 심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 장낙인 위원

- 물론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눠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 권혁부 부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충질문을 하나 하자면, 휴대폰에 스팸 메시지가 올 경우 스팸등록을 하면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스크린을 해서 다시 안 오게 만들어 주지요? 그것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 김택곤 상임위원

- 저는 이것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자율화의 상당한 진일보일 수도 있고, 또 달리 해석하면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포털, 즉 민간한테 넘기고 오히려 뒤에서 가만히 있겠다는 것,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좋은 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을 정보 등을 전달만 하는 무색·무취의 매체로만 보는데, 앞으로 규모에 따라서는 TV나 신문 매체보다 엄청나게 큰 언론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차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민간기구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본질적인 심의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왔으므로 동 시간으로 당신들이 보고 스스로 자율심 의할 것은 해라, 그러나 결정권은 우리 위원회에 있다'는 정도로 조금만 보완한 다면 매우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공동규제 시스템에 신고 들어온 것을 동 시간 에 포털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당신들 스스로 판단컨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자율규제를 하라는 것이지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예.
- 김택곤 상임위원
 - 그것은 좋은 것이지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방송사에 자체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 김택곤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을 100% 하라고 할 경우 잘못하면 인터넷 포털이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권리 구제 절차는 심의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포털로 하여금 ‘우리가 규제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제기하라’라고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장낙인 위원
 -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자체심의를 하는 것은 자사의 직원들이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지 검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가 만든 정보를 자기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말씀하십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같은 것이 아니고, 방송사는 법률상 자체심의를 의무를 부여받아서, 자체심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건전한 정보 유통을 위한 자율규제를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자율규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인지해서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처리하면….
- 장낙인 위원
 - 일은 많이 줄고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았을 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면서요?
- 권혁부 부위원장
 - 정보통신망법에는 없고 방송법에 있습니다.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정보통신망법에는 없는데, 통신사업자의 경우 허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장낙인 위원
 - 그런데 왜 계속 방송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삭제해 버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전 의견진술제도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하나 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경신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작하면 그 논의는 그냥 무산되어 버리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 장낙인 위원
 - 괜히 쓸데없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경신 위원
 -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포털의 자진삭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 장낙인 위원
 - 그렇지요. 할 수가 없게 되지요.

- 박경신 위원
 - 지금은 사후적으로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동규제를 통해서 포털이 삭제하게 되면 그런 기회마저 없어집니다. 지금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여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나 하면 자기들끼리 스스로를 징계하고 스스로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회원사가 뭔가 잘못할 경우, 예를 들어 삭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삭제했다거나 이용자들한테 불리하게 약관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삭제해야 하는데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자율규제라는 것은 자기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양보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에서 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이용자가 만든 게시물을 그냥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심의가 아니고 타율이지요. 이것은 정부의 정보제공에 따라, 정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조에 따라 사적 검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포털은 심의위원회에서 넘겨주는 정보를 보고 자기가 만든 게시물도 아니니까 쉽게 지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은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사전 의견진술제도에 관해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으므로, 폐기 내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전부 심의하려고 하지 말라, 민간한테 기능을 이양하라', 사실 우리 위원회보다는 포털 쪽이 민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 박경신 위원

- 제대로 하려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고한 사람한테 포털에 연락을 하라고 알려 줄 수는 있겠지요.

○ 김택곤 상임위원

- 잠깐만요. 물론 민간에서도 또 포털과 가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있기에 상당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포털에 일부 자율심의 권한을 넘기는 것도 일종의 자율화의 진일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선불리 추진하다가는 가입자와 포털 간의 문제에서 또 다른 침해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꼭 쥐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율심의 기능을 포털로 넘기지만 언젠가는 포털이 엄청난 언론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는 것은 늦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신중히 진행하되, 이 제도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대한다면 진퇴양난이지요.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권혁부 부위원장

- 저도 찬성 취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포털이라는 것은, 권투를 즐기는 사람한테 링을 만들어 놓고 법과 제도와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싸워봐라, 이렇게만 해 놓고 거기에 와서 조폭들이 선량한 시민을 끌어다가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까지도 허용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포털에게는 명백한 자율규제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통신심의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자율심의는 의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싸움이 조폭이 선량한 시민을 끌어다가 불공정한 권투를 하는 경우 폭행을 가하는지 여부에 대한 스크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당신들이 자율심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공동규제를 하는 것이 이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설사 그러한 공동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포털은 사업자입니다. 이용자가 많아야 수익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율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자율규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해당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도 사업자들이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당신들이 검토해 봐라'라는 정도는 사전 스크린을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생산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6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추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6개 업체를 선정한 후 신고가 들어와서 사업자들이 자율심을 하도록 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포털로 옮겨 가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사업상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요 포털사를 중심으로 하고 사후에 P2P나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주로 올리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만 고려했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정한 6개 업체는 자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일단 그 6개 포털사업자는 KISO 회원사입니다. 그 6개 포털사가 자율심의정책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KISO 회원사와의 공동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제1기 위원회 때부터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 하여튼 그런 전제 하에서는 찬성하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엄광석 위원님.

○ 업광석 위원

- 이것이 자율규제인지 타율규제인지에 대해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방송사의 자체심의회는 제작자가 직접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 내에서도 제작부서가 아닌 심의부서에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포털에서 하는 심의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 같을 수는 없지만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포털도 클린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 업광석 위원

-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털의 규제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느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선기능을 감안해 볼 때, 저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 만 위원장

- 구종상 위원님.

○ 구종상 위원

- 저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박성희 위원님.

○ 박성희 위원

- 이것이 타율적인 자율심의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고, 사적 심의에 대한 우려, 또 심의권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이의신청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황 및 문제점을 보니까 이것이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전체 시정요구 건이 약 7만 3,000건이었고 그 내용도 거의 명백한 불법·음란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할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규제라고 하니까 마치 심의위원회와 포털사가 같이 규제를 하고 심의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업무내용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자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

취져야 하기 때문에 제목에서도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포털들이 앞서서 명백한 불법·음란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해 나갈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 만 위원장

- 이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 박성희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박경신 위원

-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려면 2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적 검열이 방조되는 현상으로 비취질 수도 있는데, 시정요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표현은 권고라고 하지만, 자유게시물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물을 유지할 동기가 없는 사람한테 '이것을 지워보지 않겠느냐'라고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당연히 지우게 되지요. 이 경우도 심의대상을 인지해서 전해 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웠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통보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우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유지할 동기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삭제되면 사후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위험도 있고,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자율규제도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심의대상을 인지한 후 사무처에서 '이것이 불법인 것 같다, 아니다'와 같은 잠정적인 판단을 전혀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신고가 들어온 그대로를 포털에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포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을 삭제하기 전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하는 것이므로 사후도 좋고 사전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용자한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심의대상을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심의대상을 넘겨주면서 이 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리이러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식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사적 검열의 위험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런데 시스템에 신고가 들어오면 사무처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포털에 가는 것이지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예.

- 박 만 위원장
 - 안전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저희가 등록을 하면 양쪽에서 같이 인지가 되고, 요건 불비 등으로 '각하'되는 건만 올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자동으로 포털에서도 볼 수 있게 동시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포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지를 하게 되면 포털 나름대로의 자율심의 절차가 있을 것이므로 그 절차를 밟아서 하되, 포털에서 처리되지 않는 건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간인이 신고하는 건만 대상이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온 것들은 전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합니다. 이 시스템은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신고사실을 포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포털이 KISO라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의문이 생기면 전부 KISO에 문의를 하지요?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포털들끼리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KISO에 문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염려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민간 자율심의 등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우선 한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낙인 위원
 - 한 가지만 더 사무처에 묻겠습니다. 이렇게 공동규제를 하는 경우 혹시 심의규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 없습니다.

- 박경신 위원

- 법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 대상을 넘겨주는 정보 릴레이를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신고 건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법에 심의 대상을 어디에 넘겨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심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포털에서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된 것이므로 심의할 대상이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 박경신 위원

- 하여간 사업자들한테 심의대상을 넘겨주는 것이 심의는 아닙니다.

○ 박 만 위원장

- 지금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자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 김택곤 상임위원

- 두 분도 일단 시행을 하긴 하되, 말씀하신 점들을 유의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 장낙인 위원

- 아니지요. 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반대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 장낙인 위원

-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자율기구를 만들어서 통신심의를 넘기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심의 기능을 제외시키는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이 잘못 되면 포털이 심의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경신 위원

- 검열자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 장낙인 위원

-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박경신 위원
 - 그래서 자칫하면 포털이 검열하고 국가기관은 감시를 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동 제도를 시행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포털을 선의의 관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악의적인 관리자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 장낙인 위원
 - 아까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는 특정 방송사 내에서 방송사의 조직원들이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검열이 되는 것입니다.
- 박 만 위원장
 - 논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장낙인 위원
 -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미라고 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 김택곤 상임위원
 - 잠깐만요. 포털에도 무제한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 의견진술, 혹은 최소한 사후에라도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고, 최후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 시행한다면,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만 위원장
 - 예.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 아> '공동규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은 원안에 대해 여섯 분이 찬성하셨고 두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다수의견이 여섯 분이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 그 대신 제 의견은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 박 만 위원장
 -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앞으로의 정기회의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첫째·셋째 주 목요일 15시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경신 위원
 - 회의 일정도 중요하지만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통신심의소위의 경우 인원수를 늘릴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 만 위원장
 -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숙고해 본 후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7월 첫째 정기회의 때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 폐 회

- 박 만 위원장
 - 이상으로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20시 15분 폐회】